

— 구미시통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(안) —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통리장설치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의거 최근 지역개발과 인구변동 (아파트 건립등)으로 주민불편과 일선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한 통반 증설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통리장 정수 435명	[통장 278	• 47명	[통장 230 (증 12)
	[리장 157		[리장 157

4. 검토의견

- 최근 주택 및 아파트 건립이 증가됨에 따라 통 증설요인이 발생하여
통 증설에 따른 통리장 435명을 447명으로 12명 증원함.